



(19) 대한민국특허청(KR)
(12) 공개특허공보(A)

(11) 공개번호 10-2020-0065781
(43) 공개일자 2020년06월09일

(51) 국제특허분류(Int. Cl.)
G06Q 30/02 (2012.01) G06Q 30/06 (2012.01)
G06Q 30/08 (2012.01) G06Q 50/10 (2012.01)
(52) CPC특허분류
G06Q 30/0276 (2013.01)
G06Q 30/0619 (2013.01)
(21) 출원번호 10-2018-0152588
(22) 출원일자 2018년11월30일
심사청구일자 2018년11월30일

(71) 출원인
주식회사 크레편
전라남도 목포시 석현로 46, 308호(석현동, 목포
벤처문화산업지원센터)
(72) 발명자
이지웅
전라남도 해남군 산이면 흑두길 60
이보형
전라남도 목포시 해안로 271(광동1가)
박성현
전라남도 목포시 울도안길 48(울도동)
(74) 대리인
특허법인 이노

전체 청구항 수 : 총 14 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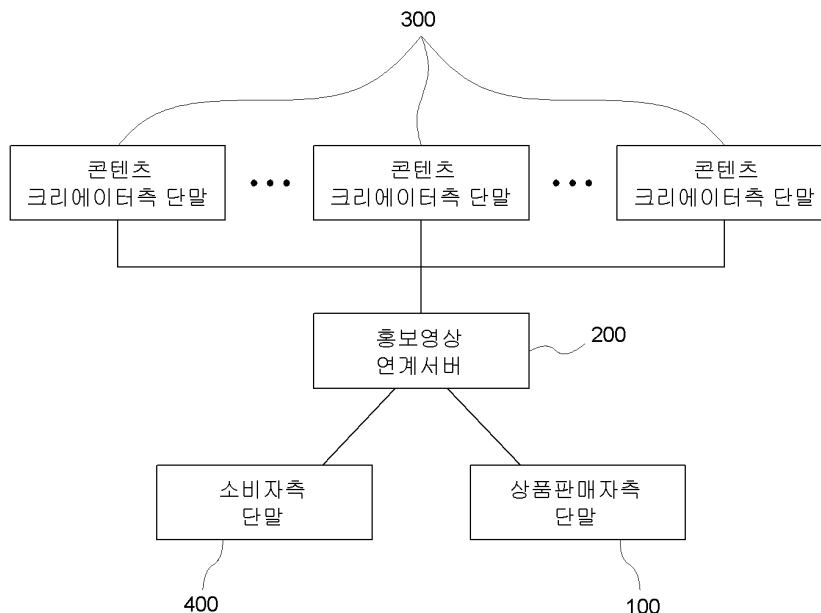
(54) 발명의 명칭 판매상품용 홍보영상 제작 연계 시스템

(57) 요약

본 발명은 상기 종래기술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본 발명의 목적은 상품의 홍보영상을 의뢰하는 상품 판매자의 홍보영상의 제작의도를 파악하고, 상품판매자의 그 의도에 따라 홍보영상을 제작해줄 콘텐츠 제작업체 들을 한 번에 안내하여 줌으로써, 보다 단축된 시간에 상품판매자의 의도에 맞는 홍보영상을 제작하도록 안내하

(뒷면에 계속)

대표도 - 도1



는 판매상품용 홍보영상 제작 연계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 판매하고자 하는 상품의 판매와 관련된 내용인 상품판매 내역정보를 업로드하는 상품판매자측 단말(100)과; 상품의 상품판매 내역정보를 토대로 제작된 해당 상품의 홍보영상인 크리에이터측 상품홍보 영상정보를 제작하는 다수의 콘텐츠 크리에이터측 단말(300)과; 상기 상품판매자측 단말(100)로부터 업로드되는 상품판매 내역정보를 판매자별 상품판매 내역정보 DB(211)에 저장관리하는 홍보영상 연계엔진(220)이 구비된 홍보영상 연계서버(200)로 이루어지고, 홍보영상 연계서버(200)의 홍보영상 연계엔진(220)은, 업로드된 상기 상품판매 내역정보에 홍보영상이 없는 경우 상기 상품판매자측 단말(100)로 홍보영상의 제작을 의뢰하는지 문의하는 영상제작 문의내역신호를 전송하며, 상품판매자측 단말(100)은, 상기 영상제작 문의내역신호를 전송받고, 그 전송된 영상제작 문의내역신호를 토대로 상품판매자가 홍보영상제작을 수락하며 입력한 정보인 홍보영상 제작 시 상품판매자가 요구하는 옵션을 포함하는 영상제작 요청상품 내역신호를 홍보영상 연계서버(200)를 경유하여 상기 다수의 콘텐츠 크리에이터측 단말(300)로 중계전송되도록 안내하고, 상기 영상제작 요청상품 내역신호를 안내받은 다수의 콘텐츠 크리에이터측 단말은, 상기 영상제작 요청상품 내역에 포함된 상품판매자가 요구하는 옵션에 대응하여, 콘텐츠 크리에이터의 요구사항이 개재된 내역을 포함하는 홍보영상 제작관련 요구내역신호들을 상기 홍보영상 연계서버(200)로 전송하며, 홍보영상 연계서버(200)의 홍보영상 연계엔진(220)은, 전송되는 상기 홍보영상 제작관련 요구내역신호들을 상기 상품판매자측 단말(100)로 안내하고, 상품판매자측 단말(100)은, 상기 홍보영상 제작관련 요구내역신호들을 제안한 콘텐츠 크리에이터측 단말들 중 선택된 해당 콘텐츠 크리에이터측 단말을 홍보영상 연계서버(200)로 통보하며, 홍보영상 연계서버(200)의 홍보영상 연계엔진(220)은, 상기 상품판매자측 단말(100)로부터 통보된 해당 콘텐츠 크리에이터측 단말을 인지하고, 그 인지된 해당 콘텐츠 크리에이터측 단말로 홍보영상의 의뢰를 통보하고, 콘텐츠 크리에이터측 단말은, 상기 홍보영상 연계서버(200)로부터 통보된 홍보영상의 의뢰를 통해 제작된 해당 상품의 홍보영상인 크리에이터측 상품홍보 영상정보를 상기 홍보영상 연계서버(200)로 전송하며, 홍보영상 연계서버의 홍보영상 연계엔진(220)은, 상기 콘텐츠 크리에이터측 단말로부터 전송된 크리에이터측 상품홍보 영상정보 및 해당 상품의 상품판매 내역정보를 인터넷 쇼핑몰에 노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52) CPC특허분류

G06Q 30/0621 (2013.01)

G06Q 30/08 (2013.01)

G06Q 50/10 (2013.01)

명세서

청구범위

청구항 1

판매하고자 하는 상품의 판매와 관련된 내용인 상품판매 내역정보를 업로드하는 상품판매자측 단말(100)과;

상품의 상품판매 내역정보를 토대로 제작된 해당 상품의 홍보영상인 크리에이터측 상품홍보 영상정보를 제작하는 다수의 콘텐츠 크리에이터측 단말(300)과;

상기 상품판매자측 단말(100)로부터 업로드되는 상품판매 내역정보를 판매자별 상품판매 내역정보 DB(211)에 저장관리하는 홍보영상 연계엔진(220)이 구비된 홍보영상 연계서버(200)로 이루어지고,

홍보영상 연계서버(200)의 홍보영상 연계엔진(220)은, 업로드된 상기 상품판매 내역정보에 홍보영상이 없는 경우 상기 상품판매자측 단말(100)로 홍보영상의 제작을 의뢰하는지 문의하는 영상제작 문의내역신호를 전송하며,

상품판매자측 단말(100)은, 상기 영상제작 문의내역신호를 전송받고, 그 전송된 영상제작 문의내역신호를 토대로 상품판매자가 홍보영상제작을 수락하며 입력한 정보인 홍보영상 제작 시 상품판매자가 요구하는 옵션을 포함하는 영상제작 요청상품 내역신호를 홍보영상 연계서버(200)를 경유하여 상기 다수의 콘텐츠 크리에이터측 단말(300)로 중계전송되도록 안내하고,

상기 영상제작 요청상품 내역신호를 안내받은 다수의 콘텐츠 크리에이터측 단말은, 상기 영상제작 요청상품 내역에 포함된 상품판매자가 요구하는 옵션에 대응하여, 콘텐츠 크리에이터의 요구사항이 개재된 내역을 포함하는 홍보영상 제작관련 요구내역신호들을 상기 홍보영상 연계서버(200)로 전송하며,

홍보영상 연계서버(200)의 홍보영상 연계엔진(220)은, 전송되는 상기 홍보영상 제작관련 요구내역신호들을 상기 상품판매자측 단말(100)로 안내하고,

상품판매자측 단말(100)은, 상기 홍보영상 제작관련 요구내역신호들을 제안한 콘텐츠 크리에이터측 단말들 중 선택된 해당 콘텐츠 크리에이터측 단말을 홍보영상 연계서버(200)로 통보하며,

홍보영상 연계서버(200)의 홍보영상 연계엔진(220)은, 상기 상품판매자측 단말(100)로부터 통보된 해당 콘텐츠 크리에이터측 단말을 인지하고, 그 인지된 해당 콘텐츠 크리에이터측 단말로 홍보영상의 의뢰를 통보하고,

콘텐츠 크리에이터측 단말은, 상기 홍보영상 연계서버(200)로부터 통보된 홍보영상의 의뢰를 통해 제작된 해당 상품의 홍보영상인 크리에이터측 상품홍보 영상정보를 상기 홍보영상 연계서버(200)로 전송하며,

홍보영상 연계서버의 홍보영상 연계엔진(220)은, 상기 콘텐츠 크리에이터측 단말로부터 전송된 크리에이터측 상품홍보 영상정보 및 해당 상품의 상품판매 내역정보를 인터넷 쇼핑몰에 노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판매상품용 홍보영상 제작 연계 시스템.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전송된 상기 영상제작 문의내역신호를 토대로 홍보영상제작을 수락한 상기 상품판매자측 단말(100)에 출력되는 정보로서, 상기 홍보영상 제작 시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기본요구항목이 표시되는 것으로, 홍보영상의 제작비용인 가격, 제작될 홍보영상의 홍보일수를 나타내는 홍보기간 및 홍보영상의 상영을 통해 발생된 수익을 콘텐츠 크리에이터에게 분배하는 비율을 나타낸 수익배분율을 포함하는 기본 항목표시칸(510); 및 상기 기본 항목표시칸(510)에 표시되는 각 요구항목에 해당하는 상품판매자의 요구치가 표시되는 판매자 요구치 표시칸(530);으로 이루어진 영상제작 요청상품 구매옵션 안내화면(500);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판매상품용 홍보영상 제작 연계 시스템.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영상제작 요청상품 구매옵션 안내화면(500)에는, 상기 홍보영상 제작 시 상품판매자가 추가로 요구하는 항목인 추가요구항목이 표시되는 추가 항목표시칸(520);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판매상품용 홍보영상 제작 연계 시스템.

청구항 4

제3항에 있어서,

상기 홍보영상 연계서버(200)에는 DB부(210);를 포함하고,

상기 DB부(210)에는, 쇼핑몰에서 판매되고 있는 상품목록이 판매업종의 카테고리별로 구분되어 저장관리되고, 해당 카테고리별 판매업종에 속하는 상품목록과 관련된 홍보영상이 게재된 웹페이지들에서 데이터마이닝을 통해 추출된 판매업종별 유행키워드가 카테고리별 판매업종마다 구분되어 저장관리되는 판매업종별 홍보영상관련 유행키워드 DB(214);를 포함하며,

상기 홍보영상 연계서버(200)의 홍보영상 연계엔진(220)은, 상기 영상제작 요청상품 내역에 해당하는 상품을 상기 판매업종별 홍보영상관련 유행키워드 DB(214)와 매칭하여, 해당 상품과 관련된 판매업종별 유행키워드 정보를 추출하고, 그 추출된 해당 상품과 관련된 판매업종별 유행키워드 정보를 상기 상품판매자측 단말(100)로 전송하며,

상기 상품판매자측 단말은, 전송되는 상기 판매업종별 유행키워드 정보를 출력하고, 출력된 상기 판매업종별 유행키워드 정보 중 선택된 판매업종별 유행키워드 정보가 상기 추가 항목표시칸(520)에 표시되도록 제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판매상품용 홍보영상 제작 연계 시스템.

청구항 5

제4항에 있어서,

상기 홍보영상 연계서버(200)에는, 상품영상 검색엔진(230);을 포함하고,

상기 홍보영상 연계서버(200)는, 상기 판매업종별 홍보영상관련 유행키워드 DB(214)에 상기 영상제작 요청상품 내역에 해당하는 상품이 속하는 카테고리별 판매업종이 없는 경우 상기 상품영상 검색엔진(230)을 운영하여, 인터넷 상의 블로그, 카페, SNS를 포함하는 웹페이지에 상기 영상제작 요청상품 내역에 해당하는 상품과 관련된 동영상의 존재여부 검색하여 수집하고, 데이터마이닝을 통해 수집된 웹페이지들에서 동일하게 게재된 키워드인 판매업종별 유행키워드를 추출하며, 그 추출된 판매업종별 유행키워드가 상기 상품판매자측 단말(100)로 전송되도록 제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판매상품용 홍보영상 제작 연계 시스템.

청구항 6

제5항에 있어서,

상기 홍보영상 연계서버(200)의 상품영상 검색엔진(230)은, 데이터마이닝을 통해 추출된 판매업종별 유행키워드를 상기 판매업종별 홍보영상관련 유행키워드 DB(214)에 저장관리하되, 해당 판매업종별 유행키워드와 관련된 상품의 카테고리별 판매업종을 신설하고, 그 신설된 카테고리별 판매업종에 상품명과 같이 저장관리되도록 제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판매상품용 홍보영상 제작 연계 시스템.

청구항 7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영상제작 요청상품 구매옵션 안내화면(500)에는, 상기 홍보영상 제작 시 상품판매자가 추가로 요구하는 항목인 추가요구항목이 표시되는 추가 항목표시칸(520)과; 상기 판매자 요구치 표시칸(530)에 표시되는 각 요구항목 중 상품판매자의 요청에 의해 입력된 정보로서, 상기 판매자가 판매자 요구치에 비해 추가적으로 허용되는 허용치가 표시되는 추가허용치 표시칸(540)과; 상기 기본 항목표시칸(510) 및 추가 항목표시칸(520)에 표시되는 각 요구항목 중 상품판매자가 선택한 요구항목에 표시되는 가중치 표시칸(550);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판매상품용 홍보영상 제작 연계 시스템.

청구항 8

제7항에 있어서,

상기 영상제작 요청상품 내역신호에는,

상기 영상제작 요청상품 구매옵션 안내화면(500)에 표시된 정보로서, 상기 기본 항목표시칸(510)에 표시된 각 기본요구항목 내용, 상기 추가 항목표시칸(520)에 표시된 각 추가요구항목 내용, 상기 각 기본요구항목 내용 상기 각 추가요구항목 내용에 대응되는 상품판매자의 요구치,

상기 판매자가 판매자 요구치에 비해 추가적으로 허용되는 허용치인 추가허용치, 상기 가중치 표시칸(550)에 표시된 해당 요구항목인 가중치 요구항목 내용으로 이루어진 영상제작 요청상품 내역정보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판매상품용 홍보영상 제작 연계 시스템.

청구항 9

제8항에 있어서,

상기 홍보영상 제작관련 요구내역신호에는,

상기 판매자 요구치 표시칸(620)에 표시된 각 요구항목의 요구치에 대응하여 콘텐츠 크리에이터가 제안하는 제안치로 이루어진 홍보영상 제작관련 요구정보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판매상품용 홍보영상 제작 연계 시스템.

청구항 10

제9항에 있어서,

상기 홍보영상 연계서버(200)의 홍보영상 연계엔진(220)은, 상기 홍보영상 제작관련 요구내역신호들이 전송되면, 그 전송된 각 홍보영상 제작관련 요구내역신호에 포함된 정보 중 상기 판매자 요구치 표시칸(620)에 표시된 각 요구항목의 요구치에 대응하여 콘텐츠 크리에이터가 제안하는 제안치 정보가 상기 영상제작 요청상품 내역신호에 포함된 정보 중 상기 각 기본요구항목 내용 상기 각 추가요구항목 내용에 대응되는 상품판매자의 요구치 정보와 대비하여 상기 요구치 정보(보다 작거나 같은 값을 갖는)에 속하는 제안치 정보를 추출하고, 그 추출된 제안치 정보를 크리에이터별 홍보영상제작 이력정보 DB(213)와 매칭하여, 그 추출된 제안치 정보를 갖는 해당 콘텐츠 크리에이터가 제작한 홍보영상에서 노출횟수가 유행기준노출회수를 초과한 홍보영상의 개수를 카운트한 유행기준 홍보영상 개수정보와 그 추출된 제안치 정보 및 그 추출된 제안치 정보를 제안한 콘텐츠 크리에이터 식별정보를 포함하는 판매자 요구수용 홍보영상 제작관련 요구내역신호를 생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판매상품용 홍보영상 제작 연계 시스템.

청구항 11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홍보영상 연계서버(200)의 홍보영상 연계엔진(220)은, 전송된 상기 홍보영상 제작관련 요구내역신호들 중 상기 요구치 정보(보다 큰 값을 갖는)에 초과된 제안치 정보를 이루는 각 값을 백분율로 연산하되, 상기 영상제작 요청상품 내역신호에 포함된 정보 중 상기 판매자 요구치 표시칸(620)에 표시된 판매자 요구치를 '100'으로

한 상태에서 크리에이터 제안치 만큼 추가된 것을 연산한 후 합산하여 평균을 낸 백분율인 크리에이터측 초과 백분율로 연산하고, 상기 영상제작 요청상품 내역신호에 포함된 정보 중 상기 판매자 요구치 표시칸(620)에 표시된 요구치를 '100'으로 한 상태에서 추가허용치 만큼 추가된 것을 연산한 후 합산하여 평균을 낸 백분율인 추가허용 백분율 정보 및 상기 크리에이터측 초과 백분율을 대비하여, 상기 추가허용 백분율 정보(보다 작거나 같은 값을 갖는)에 속하는 크리에이터측 초과 백분율 정보를 추출하고, 그 추출된 크리에이터측 초과 백분율에 해당하는 제안치 정보 중에서, 상기 영상제작 요청상품 내역신호에 포함된 정보 중 상기 가중치 표시칸(550)에 표시된 해당 요구항목인 가중치 요구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요구항목의 경우 상품판매자가 요구한 판매자 요구치 표시칸(620)의 요구치에 속하는 크리에이터측 초과 백분율에 해당하는 제안치 정보들인 추가 허용 제안치 정보만을 선별하고, 그 선별된 추가 허용 제안치 정보들을 크리에이터별 홍보영상제작 이력정보 DB(213)와 매칭하여, 그 선별된 추가 허용 제안치 정보를 갖는 해당 콘텐츠 크리에이터가 제작한 홍보영상에서 노출횟수가 유행기준노출회수를 초과한 홍보영상의 개수를 카운트한 유행기준 홍보영상 개수정보와 그 선별된 추가 허용 제안치 정보 및 그 선별된 추가 허용 제안치 정보를 제안한 콘텐츠 크리에이터 식별정보를 포함하는 추가 허용 홍보영상 제작관련 요구내역신호를 생성하고, 그 생성된 판매자 요구수용 홍보영상 제작관련 요구내역신호 및 추가 허용 홍보영상 제작관련 요구내역신호를 상기 홍보영상 제작관련 요구내역신호에 포함시켜 전송되도록 제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판매상품용 홍보영상 제작 연계 시스템.

청구항 12

제11항에 있어서,

전송된 상기 홍보영상 제작관련 요구내역신호들을 토대로 상기 상품판매자측 단말(100)에 출력되는 정보로서, 홍보영상의 제작과 관련하여 다수의 콘텐츠 크리에이터가 제안한 제안치가 상품판매자가 요구한 각 요구항목의 요구치를 수용한 부분에 대해 상품판매자가 해당 크리에이터를 인지할 수 있게 표시하는 판매자 요구 수용 크리에이터 리스트부(710); 및 홍보영상의 제작과 관련하여 다수의 콘텐츠 크리에이터가 제안한 제안치가 상품판매자가 요구한 각 요구항목의 요구치를 초과한 리스트 중에서 상품판매자의 추가 허용 제안치에 포함되는 해당 크리에이터를 상품판매자가 인지할 수 있게 표시하는 판매자 추가 허용 크리에이터 리스트부(720);로 이루어진 크리에이터 리스트화면(700);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판매상품용 홍보영상 제작 연계 시스템.

청구항 13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판매자 요구 수용 크리에이터 리스트부(710)에는, 홍보영상의 제작과 관련하여 상품판매자가 요구한 각 요구항목의 요구치를 수용한 크리에이터들을 식별하는 크리에이터 식별자줄(711)과; 홍보영상의 제작과 관련하여 상품판매자가 요구한 각 요구항목의 요구치를 수용한 크리에이터들이 제작한 홍보영상에서 노출회수가 유행기준 노출회수를 초과한 홍보영상의 개수를 표시한 유행기준 홍보영상 개수표시줄(712);로 이루어지고,

상기 판매자 추가 허용 크리에이터 리스트부(720)에는, 다수의 콘텐츠 크리에이터가 제안한 제안치가 상품판매자가 요구한 각 요구항목의 요구치를 초과한 리스트 중에서 상품판매자의 추가 허용 제안치에 포함되는 해당 크리에이터들을 식별하는 추가 크리에이터 식별자줄(721)과; 다수의 콘텐츠 크리에이터가 제안한 제안치가 상품판매자가 요구한 각 요구항목의 요구치를 초과한 리스트 중에서 상품판매자의 추가 허용 제안치에 포함되는 해당 크리에이터들이 제작한 홍보영상에서 노출회수가 유행기준노출회수를 초과한 홍보영상의 개수를 표시한 추가 유행기준 홍보영상 개수표시줄(722)과; 상기 크리에이터측 초과 백분율 및 추가허용 백분율이 표시되는 백분율 표시줄(723);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판매상품용 홍보영상 제작 연계 시스템.

청구항 14

제1항에 있어서,

홍보영상 연계서버(200)의 홍보영상 연계엔진(220)은, 상기 인터넷 쇼핑몰에 접속한 소비자측 단말에서 그 인터넷 쇼핑몰에 게재된 크리에이터측 상품홍보 영상정보를 시청하면 이를 카운팅하고, 그 카운팅된 크리에이터측

상품홍보 영상정보의 시청 수인 홍보상품 노출회수정보를 크리에이티브 홍보영상제작 이력정보 DB(213)에 누적 저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판매상품용 홍보영상 제작 연계 시스템.

발명의 설명

기술 분야

[0001] 본 발명은 상품의 홍보영상을 의뢰하는 상품판매자의 홍보영상의 제작의도를 파악하고, 상품판매자의 그 의도에 따라 홍보영상을 제작해줄 콘텐츠 제작업체들을 한 번에 안내하여 줌으로써, 보다 단축된 시간에 상품판매자의 의도에 맞는 홍보영상을 제작하도록 안내하는 판매상품용 홍보영상 제작 연계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배경 기술

[0002] 인터넷과 이동통신으로 대표되는 정보통신 기술은 현대인의 생활 패턴을 변화시키고 있다. 거의 모든 가정, 학교 및 사무실에 인터넷이 가능한 개인용 컴퓨터가 보급되어 웹 사이트를 이용한 정보 습득, 전자 상거래를 이용한 상품 구매, 이메일을 통한 소식의 교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0003] 이동통신 서비스의 경우,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이동통신단말기를 사용하여 음성 통화 위주의 이동통신 서비스만 이용할 수 있었다.

[0004] 하지만, 최근에는 이동통신 단말기에도 인터넷을 이용한 데이터 통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무선 인터넷 서비스가 보급되었다.

[0005] 한편, 최근에는 이와 같은 유무선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한 쇼핑물 서비스 및 상품홍보 서비스가 각광을 받고 있으며, 아마존(<http://wwwamazoncom/>), 옥션(<http://auctioncokr>), 지마켓(<http://gmarketcokr>) 등의 서비스가 등이 대표적이다.

[0006] 이에 따라, 상품홍보방식도 기존에 TV나 신문 등의 매스미디어를 통해 홍보하는 방식에서, 점차적으로, 인터넷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는 배너나 상업용 팝업창과 같이 다양한 홍보방식으로 대체되고 있으며, 상품을 홍보하는 내용도 텍스트 기반에서 동영상 기반으로 이동되고 있는 실정이다.

[0007] 한편, 상품판매자는 쇼핑물에서 상품판매를 하고자 할 경우 상품홍보내용도 함께 제작해야 한다.

[0008] 상품홍보내용은 텍스트의 경우 상품판매자 개인적으로 제작이 가능하나 정지영상, 동영상 또는 이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매스미디어 콘텐츠인 홍보영상의 경우에는 제작이 어렵기 때문에, 콘텐츠 제작업체에게 의뢰를 해야 한다.

[0009] 그렇지만, 상품판매자는 무수히 많은 콘텐츠 제작업체들 중 자신의 의도가 최대한 반영된 홍보영상의 맞춤형 제작이 가능한 콘텐츠 제작업체를 찾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시간 또한 많이 소요되는 문제점이 있다.

선행기술문헌

특허문헌

[0010] (특허문헌 0001) KR 10-2009-0085938 A

발명의 내용

해결하려는 과제

[0011] 본 발명은 상기 종래기술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본 발명의 목적은 상품의 홍보영상을 의뢰하는 상품판매자의 홍보영상의 제작의도를 파악하고, 상품판매자의 그 의도에 따라 홍보영상을 제작해줄 콘텐츠 제작업체들을 한 번에 안내하여 줌으로써, 보다 단축된 시간에 상품판매자의 의도에 맞는 홍보영상을 제작하도록 안내하는 판매상품용 홍보영상 제작 연계 시스템을 제공하는데 있다.

과제의 해결 수단

[0012] 본 발명을 달성하기 위한 기술적 사상으로 본 발명의 판매상품용 홍보영상 제작 연계 시스템은, 판매하고자 하

는 상품의 판매와 관련된 내용인 상품판매 내역정보를 업로드하는 상품판매자측 단말과; 상품의 상품판매 내역 정보를 토대로 제작된 해당 상품의 홍보영상인 크리에이터측 상품홍보 영상정보를 제작하는 다수의 콘텐츠 크리에이터측 단말과; 상기 상품판매자측 단말로부터 업로드되는 상품판매 내역정보를 판매자별 상품판매 내역정보 DB에 저장관리하는 홍보영상 연계엔진이 구비된 홍보영상 연계서버로 이루어지고, 홍보영상 연계서버의 홍보영상 연계엔진은, 업로드된 상기 상품판매 내역정보에 홍보영상이 없는 경우 상기 상품판매자측 단말로 홍보영상의 제작을 의뢰하는지 문의하는 영상제작 문의내역신호를 전송하며, 상품판매자측 단말은, 상기 영상제작 문의내역신호를 전송받고, 그 전송된 영상제작 문의내역신호를 토대로 상품판매자가 홍보영상제작을 수락하며 입력한 정보인 홍보영상 제작 시 상품판매자가 요구하는 옵션을 포함하는 영상제작 요청상품 내역신호를 홍보영상 연계서버를 경유하여 상기 다수의 콘텐츠 크리에이터측 단말로 중계전송되도록 안내하고, 상기 영상제작 요청상품 내역신호를 안내받은 다수의 콘텐츠 크리에이터측 단말은, 상기 영상제작 요청상품 내역에 포함된 상품판매자가 요구하는 옵션에 대응하여, 콘텐츠 크리에이터의 요구사항이 개재된 내역을 포함하는 홍보영상 제작관련 요구내역신호들을 상기 홍보영상 연계서버로 전송하며, 홍보영상 연계서버의 홍보영상 연계엔진은, 전송되는 상기 홍보영상 제작관련 요구내역신호들을 상기 상품판매자측 단말로 안내하고, 상품판매자측 단말은, 상기 홍보영상 제작관련 요구내역신호들을 제안한 콘텐츠 크리에이터측 단말들 중 선택된 해당 콘텐츠 크리에이터측 단말을 홍보영상 연계서버로 통보하며, 홍보영상 연계서버의 홍보영상 연계엔진은, 상기 상품판매자측 단말로부터 통보된 해당 콘텐츠 크리에이터측 단말을 인지하고, 그 인지된 해당 콘텐츠 크리에이터측 단말로 홍보영상의 의뢰를 통보하고, 콘텐츠 크리에이터측 단말은, 상기 홍보영상 연계서버로부터 통보된 홍보영상의 의뢰를 통해 제작된 해당 상품의 홍보영상인 크리에이터측 상품홍보 영상정보를 상기 홍보영상 연계서버로 전송하며, 홍보영상 연계서버의 홍보영상 연계엔진은, 상기 콘텐츠 크리에이터측 단말로부터 전송된 크리에이터측 상품홍보 영상정보 및 해당 상품의 상품판매 내역정보를 인터넷 쇼핑몰에 노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0013] 본 발명의 판매상품용 홍보영상 제작 연계 시스템에는, 전송된 상기 영상제작 문의내역신호를 토대로 홍보영상 제작을 수락한 상기 상품판매자측 단말에 출력되는 정보로서, 상기 홍보영상 제작 시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기본 요구항목이 표시되는 기본 항목표시칸; 상기 홍보영상 제작 시 상품판매자가 추가로 요구하는 항목인 추가요구 항목이 표시되는 추가 항목표시칸; 및 상기 기본 항목표시칸에 표시되는 각 요구항목에 해당하는 상품판매자의 요구치가 표시되는 판매자 요구치 표시칸;으로 이루어진 영상제작 요청상품 구매옵션 안내화면;을 포함한다.

[0014] 상기 홍보영상 연계서버에는 DB부;를 포함하고, 상기 DB부에는, 쇼핑몰에서 판매되고 있는 상품목록이 판매업종의 카테고리별로 구분되어 저장관리되고, 해당 카테고리별 판매업종에 속하는 상품목록과 관련된 홍보영상이 개재된 웹페이지들에서 데이터마이닝을 통해 추출된 판매업종별 유행키워드가 카테고리별 판매업종마다 구분되어 저장관리되는 판매업종별 홍보영상관련 유행키워드 DB;를 포함하며, 상기 홍보영상 연계서버의 홍보영상 연계엔진은, 상기 영상제작 요청상품 내역에 해당하는 상품을 상기 판매업종별 홍보영상관련 유행키워드 DB와 매칭하여, 해당 상품과 관련된 판매업종별 유행키워드 정보를 추출하고, 그 추출된 해당 상품과 관련된 판매업종별 유행키워드 정보를 상기 상품판매자측 단말로 전송하며, 상기 상품판매자측 단말은, 전송되는 상기 판매업종별 유행키워드 정보를 출력하고, 출력된 상기 판매업종별 유행키워드 정보 중 선택된 판매업종별 유행키워드 정보가 상기 추가 항목표시칸에 표시되도록 제어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0015] 상기 홍보영상 연계서버에는, 상품영상 검색엔진;을 포함하고, 상기 홍보영상 연계서버는, 상기 판매업종별 홍보영상관련 유행키워드 DB에 상기 영상제작 요청상품 내역에 해당하는 상품이 속하는 카테고리별 판매업종이 없는 경우 상기 상품영상 검색엔진을 운영하여, 인터넷 상의 블로그, 카페, SNS를 포함하는 웹페이지에 상기 영상제작 요청상품 내역에 해당하는 상품과 관련된 동영상 존재하는지 검색하여 수집하고, 데이터마이닝을 통해 수집된 웹페이지들에서 동일하게 개재된 키워드인 판매업종별 유행키워드를 추출하며, 그 추출된 판매업종별 유행키워드가 상기 상품판매자측 단말로 전송되도록 제어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0016] 상기 홍보영상 연계서버의 상품영상 검색엔진은, 데이터마이닝을 통해 추출된 판매업종별 유행키워드를 상기 판매업종별 홍보영상관련 유행키워드 DB에 저장관리하되, 해당 판매업종별 유행키워드와 관련된 상품의 카테고리별 판매업종을 신설하고, 그 신설된 카테고리별 판매업종에 상품명과 같이 저장관리되도록 제어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발명의 효과

[0017] 본 발명은 상품의 홍보영상을 의뢰하는 상품판매자의 홍보영상의 제작의도를 파악하고, 상품판매자의 그 의도에 따라 홍보영상을 제작해줄 콘텐츠 제작업체들을 한 번에 안내하여 줌으로써, 보다 단축된 시간에 상품판매자의 의도에 맞는 홍보영상을 제작하도록 안내하는 효과를 발휘한다.

[0018] 또한, 본 발명은 상품의 홍보영상을 의뢰하는 상품판매자가 판매하고자 하는 해당 상품의 홍보영상과 관련된 여러 유행트렌드들을 제안하여, 현재의 트렌드에 최적화된 홍보영상을 제작할 수 있게 안내하여 주는 효과도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0019] 도 1은 본 발명의 판매상품용 홍보영상 제작 연계 시스템을 나타낸 전체구성도.
 도 2는 본 발명의 판매상품용 홍보영상 제작 연계 시스템을 이루는 구성 중 홍보영상 연계서버를 나타낸 상세 블록구성도.
 도 3은 상품판매자측 단말에 출력되는 화면으로서, 영상제작 요청상품 구매옵션 안내화면을 나타낸 도면.
 도 4는 콘텐츠 크리에이터측 단말에 출력되는 화면으로서, 영상제작 요청상품 구매대응 제안화면을 나타낸 도면.
 도 5는 상품판매자측 단말에 출력되는 화면으로서, 크리에이터 리스트화면을 나타낸 도면이다.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0020] 본 발명의 실시예의 구성 및 작용에 대하여 첨부한 도면을 참조하면서 상세히 설명하기에 앞서, 본 발명은 다양한 변경을 가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형태를 가질 수 있는 바, 하기의 실시예들은 본 발명을 상세히 설명하고자 언급된 것일 뿐이지, 본 발명을 특정한 개시 형태에 대해 한정하려는 것이 아니며, 본 발명의 사상 및 기술범위에 포함되는 모든 변경, 균등물 내지 대체물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0021] 또한, 각 도면에서 구성요소들은 이해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크기나 두께를 과장되게 표현하거나, 또는 단순화하여 표현하고 있으나 이에 의하여 본 발명의 보호범위가 제한적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되며,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가급적 동일한 도면부호를 명기하기로 한다.

[0022] 이와 더불어, 본 발명에서 사용한 용어는 단지 하기의 실시예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된 것으로, 본 발명을 한정하려는 의도가 아니며, 단수의 표현은 문맥상 명백하게 다르게 뜻하지 않는 한, 복수의 표현을 포함한다.

[0023] 도시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판매상품용 홍보영상 제작 연계 시스템은 상품판매자측 단말(100), 다수의 콘텐츠 크리에이터측 단말(300), 홍보영상 연계서버(200) 및 소비자측 단말(400)로 이루어진다.

[0024] 먼저, 상품판매자측 단말(100)은 판매하고자 하는 상품의 판매와 관련된 내용인 상품판매 내역정보를 후술되는 홍보영상 연계서버(200)로 업로드하여, 상품판매를 요청하는 단말부재이다.

[0025] 이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상품판매자측 단말(100)은 디스플레이부(110)를 갖는 개인용 컴퓨터(PC)나 팜탑(palmtops), 피디에이(Personal Digital Assistants;PDAs),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스마트폰과 같은 통신 단말 장치, 휴대용 멀티미디어 재생기(PMP), 또는 UMPC(Ultra-mobile PC) 및 MID(Mobile Internet Device) 등 다양한 유무선단말이 선택적용될 수 있다.

[0026] 한편, 디스플레이부(110)의 경우에는 액정(LCD), 박막 트랜지스터 액정(TFT LCD), 유기 발광 다이오드(OLED), 플렉시블 디스플레이(flexible display), 3차원 디스플레이 등 다양한 출력부재가 선택 적용되어질 수 있다.

[0027] 상기 다수의 콘텐츠 크리에이터측 단말(300)은 상품의 상품판매 내역정보를 토대로 제작된 해당 상품의 홍보영상인 크리에이터측 상품홍보 영상정보를 제작하는 단말부재로, 상품판매자측 단말(100)과 같이 개인용 컴퓨터(PC)나 팜탑(palmtops), 피디에이(Personal Digital Assistants;PDAs),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스마트폰과 같은 통신 단말 장치, 휴대용 멀티미디어 재생기(PMP), 또는 UMPC(Ultra-mobile PC) 및 MID(Mobile Internet Device) 등 다양한 유무선단말이 선택적용될 수 있다.

[0028] 상기 홍보영상 연계서버(200)는 상품의 홍보영상을 의뢰하는 상품판매자의 홍보영상의 제작의도를 파악하고, 상품판매자의 그 의도에 따라 홍보영상을 제작해줄 콘텐츠 제작업체들을 한 번에 안내하여 주는 서버부재이다.

[0029] 이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홍보영상 연계서버(200)의 세부구성은 DB부(210), 홍보영상 연계엔진(220) 및 상품영상 검색엔진(230)으로 이루어진다.

[0030] 먼저, DB부(210)는 상품의 홍보영상을 의뢰하는 상품판매자의 홍보영상의 제작의도를 파악하고, 상품판매자의 그 의도에 따라 홍보영상을 제작해줄 콘텐츠 제작업체들을 한 번에 안내하여 주는데 필요한 각종 데이터베이스

가 저장관리되는 부재이다.

- [0031] 이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DB부(210)에는 판매자별 상품판매 내역정보 DB(211), 판매자별 영상제작 요청상품 관련 요구내역정보 DB(212), 크리에이티브별 홍보영상제작 이력정보 DB(213) 및 판매업종별 홍보영상관련 유행키워드 DB(214)를 포함한다.
- [0032] 먼저, 판매자별 상품판매 내역정보 DB(211)는 상품판매자가 회원 가입 시 등록한 정보로, 회원의 ID, 패스워드, 이동통신단말기를 포함하는 전화번호, 주소지를 포함하는 상품판매자 신상정보 및 해당 상품판매자가 판매하고자 하는 상품을 판매하는데 필요한 정보인 상품판매 내역정보가 회원별로 구분되어 저장관리되는 데이터베이스 부재이다.
- [0033] 상기 판매자별 영상제작 요청상품관련 요구내역정보 DB(212)는 후술되는 영상제작 요청상품 구매옵션 안내화면(500)에 표시된 정보로서, 기본 항목표시칸(510)에 표시된 각 기본요구항목 내용, 추가 항목표시칸(520)에 표시된 각 추가요구항목 내용, 각 기본요구항목 내용, 각 추가요구항목 내용에 대응되는 상품판매자의 요구치, 판매자가 판매자 요구치에 비해 추가적으로 허용되는 허용치인 추가허용치 및 가중치 표시칸(550)에 표시된 해당 요구항목인 가중치 요구항목 내용을 포함하는 정보가 회원별로 구분되어 저장관리되는 데이터베이스부재이다.
- [0034] 상기 크리에이티브별 홍보영상제작 이력정보 DB(213)는 콘텐츠 크리에이터가 회원 가입 시 등록한 정보로, 회원의 ID, 패스워드, 이동통신단말기를 포함하는 전화번호, 주소지를 포함하는 콘텐츠 크리에이터 신상정보 및 해당 콘텐츠 크리에이터가 제작한 홍보영상인 크리에이터측 상품홍보 영상정보, 쇼핑몰을 통해 노출된 해당 크리에이터측 상품홍보 영상정보의 노출회수를 나타내는 홍보상품 노출회수정보가 저장관리되는 데이터베이스부재이다.
- [0035] 상기 판매업종별 홍보영상관련 유행키워드 DB(214)는 쇼핑몰에서 판매되고 있는 상품목록이 판매업종의 카테고리별로 구분되어 저장관리되고, 해당 카테고리별 판매업종에 속하는 상품목록과 관련된 홍보영상이 게재된 웹페이지들에서 데이터마이닝을 통해 추출된 판매업종별 유행키워드가 카테고리별 판매업종마다 구분되어 저장관리되는 데이터베이스부재이다.
- [0036] 상기 홍보영상 연계엔진(220)은 홍보영상 연계서버(200)에 의해 운영되는 부재로서, 상품의 홍보영상을 의뢰하는 상품판매자의 홍보영상의 제작의도를 파악하고, 상품판매자의 그 의도에 따라 홍보영상을 제작해줄 콘텐츠 제작업체들을 한 번에 안내되도록 제어하는 모듈이다.
- [0037] 상기 상품영상 검색엔진(230)은 홍보영상 연계서버(200)에 의해 운영되는 부재로서, 판매업종별 홍보영상관련 유행키워드 DB(214)에 영상제작 요청상품 내역에 해당하는 상품이 속하는 카테고리별 판매업종이 없는 경우 상품영상 검색엔진(230)을 운영하여, 인터넷 상의 블로그, 카페, SNS를 포함하는 웹페이지에 영상제작 요청상품 내역에 해당하는 상품과 관련된 동영상의 존재여부 검색하여 수집하고, 데이터마이닝을 통해 수집된 웹페이지들에서 동일하게 게재된 키워드인 판매업종별 유행키워드를 추출하며, 그 추출된 판매업종별 유행키워드가 상품판매자측 단말(100)로 전송되도록 제어하는 모듈이다.
- [0038] 특히, 홍보영상 연계서버(200)의 상품영상 검색엔진(230)은, 데이터마이닝을 통해 추출된 판매업종별 유행키워드를 판매업종별 홍보영상관련 유행키워드 DB(214)에 저장관리하되, 해당 판매업종별 유행키워드와 관련된 상품의 카테고리별 판매업종을 신설하고, 그 신설된 카테고리별 판매업종에 상품명과 같이 저장관리되도록 제어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 [0039] 또한, 홍보영상 연계서버(200)의 상품영상 검색엔진(230)은 해당 판매업종별 유행키워드를 수집한 곳의 웹페이지의 URL도 함께 수집하여, 상품판매자가 해당 유행키워드를 클릭할 경우 링크시켜 출력될 수 있게 안내함으로써, 상품판매자의 홍보영상 제작에 도움이 될 수 있게 제공한다.
- [0040] 한편, 홍보영상 연계서버(200)의 홍보영상 연계엔진(220)은 상품판매자측 단말(100)로부터 업로드된 상품판매 내역정보가 텍스트로 이루어진 정보인 경우 해당 상품판매자측 단말(100)로 해당 상품의 홍보영상인 판매자측 상품홍보 영상정보가 존재하는지 확인하여, 존재하는 경우 추가로 업로드를 받고, 그 업로드된 상품판매 내역정보 및 판매자측 상품홍보 영상정보를 판매자별 상품판매 내역정보 DB(211)에 저장한다.
- [0041] 이후, 홍보영상 연계서버(200)의 홍보영상 연계엔진(220)은 판매자별 상품판매 내역정보 DB(211)에 저장관리되는 해당 상품의 상품판매 내역정보 및 판매자측 상품홍보 영상정보를 인터넷 쇼핑몰에 노출하여, 상품판매 시 홍보영상으로 활용한다.
- [0042] 이와 더불어, 홍보영상 연계서버(200)의 홍보영상 연계엔진(220)은 상품판매자측 단말(100)로부터 업로드된 상품판매 내역정보에 홍보영상이 없는 경우 상품판매자측 단말(100)로 홍보영상의 제작을 의뢰하는지 문의하는 영

상제작 문의내역신호를 전송한다.

- [0043] 이때, 상품판매자측 단말(100)에서 전송되는 영상제작 문의내역신호를 참조하여, 홍보영상의 제작을 원하지 않는다고 통보하면, 홍보영상 연계서버(200)의 홍보영상 연계엔진은 판매자별 상품판매 내역정보 DB(211)에 저장 관리되는 텍스트정보인 해당 상품의 상품판매 내역정보만을 인터넷 쇼핑몰에 노출한다.
- [0044] 이와 더불어, 상품판매자측 단말(100)은 영상제작 문의내역신호를 전송받고, 그 전송된 영상제작 문의내역신호를 토대로 상품판매자가 홍보영상제작을 수락하며 입력한 정보인 홍보영상 제작 시 상품판매자가 요구하는 옵션을 포함하는 영상제작 요청상품 내역신호를 홍보영상 연계서버(200)를 경유하여 다수의 콘텐츠 크리에이터측 단말(300)로 중계전송되도록 안내한다.
- [0045] 여기서, 전송된 영상제작 문의내역신호를 토대로 홍보영상제작을 수락한 상품판매자측 단말(100)의 디스플레이부(110)에는 영상제작 요청상품 구매옵션 안내화면(500)이 출력되어져, 앞에서 언급한 영상제작 요청상품 내역신호에 포함되는 상품판매자가 홍보영상제작 시 요구하는 각종 정보를 작성할 수 있게 안내하여주는 기능을 수행한다.
- [0046]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는 영상제작 요청상품 구매옵션 안내화면(500)은 상품판매자측 단말(100)에 홍보영상 제작을 의뢰하는데 필요한 전용 앱이 설치된 경우 상품판매자측 단말(100)에서 제공되고, 상품판매자측 단말(100)이 홍보영상 연계서버(200)에 접속하여 홍보영상 제작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홍보영상 연계서버(200)에서 제공되어질 수 있다.
- [0047] 이러한 영상제작 요청상품 구매옵션 안내화면(500)의 세부구성은 홍보영상 제작 시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기본요구항목이 표시되는 것으로, 홍보영상의 제작비용인 가격, 제작될 홍보영상의 홍보일수를 나타내는 홍보기간 및 홍보영상의 상영을 통해 발생된 수익을 콘텐츠 크리에이터에게 분배하는 비율을 나타낸 수익배분율을 포함하는 기본 항목표시칸(510), 홍보영상 제작 시 상품판매자가 추가로 요구하는 추가요구항목이 표시되는 추가 항목표시칸(520), 기본 항목표시칸(510) 및 추가 항목표시칸(520)에 표시되는 각 요구항목에 해당하는 상품판매자의 요구치가 표시되는 판매자 요구치 표시칸(530), 판매자 요구치 표시칸(530)에 표시되는 각 요구항목 중 상품판매자의 요청에 의해 입력된 정보로서, 판매자 요구치 표시칸(530)에 표시된 요구치를 백으로 해서 추가적으로 허용되는 허용치가 표시되는 추가허용치 표시칸(540) 및 기본 항목표시칸(510) 및 추가 항목표시칸(520)에 표시되는 각 요구항목 중 상품판매자가 선택한 요구항목에 표시되는 가중치 표시칸(550)으로 이루어진다.
- [0048] 특히, 요청상품 구매옵션 안내화면(500)에 구비된 기본 항목표시칸(510)에 삽입되는 홍보영상의 제작비용인 가격, 제작될 홍보영상의 홍보일수를 나타내는 홍보기간 및 홍보영상의 상영을 통해 발생된 수익을 콘텐츠 크리에이터에게 분배하는 비율을 나타낸 수익배분율을 통해 홍보영상을 의뢰하는 상품판매자의 홍보영상의 제작의도를 콘텐츠 크리에이터들이 바로 파악 가능하고, 이를 통해, 상품판매자의 해당 의도에 따라 홍보영상을 제작해줄 콘텐츠 제작업체들이 자신의 반영치를 조율하여 해당 상품판매자에게 일시에 안내하여 줌으로써, 보다 단축된 시간에 상품판매자의 의도에 맞는 홍보영상을 제작하도록 안내하는 이점을 제공한다.
- [0049] 한편, 상품판매자측 단말(100)은 영상제작 요청상품 구매옵션 안내화면(500)에 입력 표시된 각 정보인, 기본 항목표시칸(510)에 표시된 각 기본요구항목 내용, 추가 항목표시칸(520)에 표시된 각 추가요구항목 내용, 각 기본요구항목 내용 및 각 추가요구항목 내용에 대응되는 상품판매자의 요구치, 판매자가 판매자 요구치에 비해 추가적으로 허용되는 허용치인 추가허용치, 가중치 표시칸(550)에 표시된 해당 요구항목인 가중치 요구항목 내용으로 이루어진 영상제작 요청상품 내역정보를 포함하는 영상제작 요청상품 내역신호를 생성한다.
- [0050] 한편, 영상제작 요청상품 구매옵션 안내화면(500)의 추가 항목표시칸(520)은 상품판매자가 현재 자신이 판매하고자 하는 상품과 관련된 홍보영상의 유행트렌드를 인지하고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하는 항목으로서, 만약 상품판매자가 그러한 유행트렌드를 인지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품판매자가 판매하고자 하는 해당 상품의 홍보영상과 관련된 여러 유행트렌드들을 제안하여, 현재의 트렌드에 최적화된 홍보영상을 제작할 수 있게 안내하는 기능도 제공할 수 있다.
- [0051] 이를 위해, 홍보영상 연계서버(200)의 홍보영상 연계엔진(220)은, 영상제작 요청상품 내역에 해당하는 상품을 쇼핑몰에서 판매되고 있는 상품목록이 판매업종의 카테고리별로 구분되어 저장관리되고, 해당 카테고리별 판매업종에 속하는 상품목록과 관련된 홍보영상이 게재된 웹페이지들에서 데이터마이닝을 통해 추출된 판매업종별 유행키워드가 카테고리별 판매업종마다 구분되어 저장관리되는 판매업종별 홍보영상관련 유행키워드 DB(214)와 매칭하여, 해당 상품과 관련된 판매업종별 유행키워드 정보를 추출하고, 그 추출된 해당 상품과 관련된 판매업종별 유행키워드 정보를 상품판매자측 단말(100)로 전송하면, 상품판매자측 단말(100)은 전송되는 판매업종별

유행키워드 정보를 출력하고, 출력된 판매업종별 유행키워드 정보 중 선택된 판매업종별 유행키워드 정보가 추가 항목표시칸(520)에 표시되도록 제어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 [0052] 이와 더불어, 홍보영상 연계서버(200)는 판매업종별 홍보영상관련 유행키워드 DB(214)에 영상제작 요청상품 내역에 해당하는 상품이 속하는 카테고리별 판매업종이 없는 경우 상품영상 검색엔진(230)을 운영하여, 인터넷 상의 블로그, 카페, SNS를 포함하는 웹페이지에 영상제작 요청상품 내역에 해당하는 상품과 관련된 동영상이 존재하는지 검색하여 수집하고, 데이터마이닝을 통해 수집된 웹페이지들에서 동일하게 개제된 키워드인 판매업종별 유행키워드를 추출하며, 그 추출된 판매업종별 유행키워드가 상품판매자측 단말(100)로 전송되도록 제어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 [0053] 이와 함께, 홍보영상 연계서버(200)의 상품영상 검색엔진(230)은 데이터마이닝을 통해 추출된 판매업종별 유행키워드를 판매업종별 홍보영상관련 유행키워드 DB(214)에 저장관리하되, 해당 판매업종별 유행키워드와 관련된 상품의 카테고리별 판매업종을 신설하고, 그 신설된 카테고리별 판매업종에 상품명과 같이 저장관리되도록 제어하는 기능도 수행한다.
- [0054] 그리고 영상제작 요청상품 내역신호를 안내받은 다수의 콘텐츠 크리에이터측 단말(300)은 영상제작 요청상품 내역에 포함된 상품판매자가 요구하는 옵션에 대응하여, 콘텐츠 크리에이터의 요구사항이 개제된 내역을 포함하는 홍보영상 제작관련 요구내역신호들을 홍보영상 연계서버(200)로 전송한다.
- [0055] 여기서, 영상제작 요청상품 내역신호를 토대로 홍보영상 제작 시 상품판매자의 요구에 따른 다수의 콘텐츠 크리에이터의 제안치인 홍보영상 제작관련 요구내역신호들을 생성할 수 있도록 다수의 콘텐츠 크리에이터측 단말(300)의 디스플레이부에는 영상제작 요청상품 구매대응 제안화면(600)이 출력되어져, 앞에서 언급한 홍보영상 제작관련 요구내역신호에 포함하는 각종 정보를 작성할 수 있게 안내하여주는 기능을 수행한다.
- [0056]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영상제작 요청상품 구매대응 제안화면(600)에는 상품판매자가 요구한 기본요구항목 및 추가요구항목이 표시되는 요구항목 표시칸(610), 요구항목 표시칸(610)에 표시되는 각 요구항목에 해당하는 상품판매자의 요구치가 표시되는 판매자 요구치 표시칸(620) 및 판매자 요구치 표시칸(620)에 표시된 각 요구항목의 요구치에 대하여 콘텐츠 크리에이터가 제안하는 제안치가 표시되는 크리에이터 제안치 표시칸(630)으로 이루어진다.
- [0057] 여기서, 요구항목 표시칸(610)에 표시되는 상품판매자의 기본요구항목에는 홍보영상의 제작비용인 가격, 제작될 홍보영상의 홍보일수를 나타내는 홍보기간 및 홍보영상의 상영을 통해 발생된 수익을 콘텐츠 크리에이터에게 분배하는 비율을 나타낸 수익배분율을 포함한다.
- [0058] 이를 통해, 홍보영상 제작관련 요구내역신호에는 판매자 요구치 표시칸(620)에 표시된 각 요구항목의 요구치에 대응하여 콘텐츠 크리에이터가 제안하는 제안치로 이루어진 홍보영상 제작관련 요구정보를 포함한다.
- [0059] 그리고 홍보영상 연계서버(200)의 홍보영상 연계엔진(220)은 전송되는 홍보영상 제작관련 요구내역신호들을 상품판매자측 단말(100)로 안내한다.
- [0060] 이때, 홍보영상 연계서버(200)의 홍보영상 연계엔진(220)은, 전송된 홍보영상 제작관련 요구내역신호들 중 요구치 정보(보다 큰 값을 갖는)에 초과된 제안치 정보를 이루는 각 값을 백분율로 연산하되, 영상제작 요청상품 내역신호에 포함된 정보 중 판매자 요구치 표시칸(620)에 표시된 요구치를 '100'으로 해서 연산한 후 합산하여 평균을 낸 백분율인 크리에이터측 초과 백분율로 연산한다.
- [0061] 여기서, 요구치 정보가 초과되거나 보다 큰 값이라 함은, 도 4를 주로 참조하여, 요구항목 표시칸(610)에 표시된 것 중 가격을 보면, 판매자 요구치는 100만원인데, 콘텐츠 크리에이터의 제안치는 120만원으로서, 콘텐츠 크리에이터에서 20만원을 초과(또는 큰 값)하여 제안한 것을 뜻한다.
- [0062] 또한, 크리에이터측 초과 백분율은 요구항목 표시칸(610)에 표시된 것 중 가격을 보면, 판매자 요구치는 100만원인데, 콘텐츠 크리에이터의 제안치는 120만원으로, 20%가 초과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0063] 한편, 요구항목 표시칸(610)에 표시된 것 중 수익배분율의 경우 판매자 요구치나 크리에이터 요구치가 동일하나, 만약, 크리에이터 제안치가 11%로서 판매자 요구치보다 1%가 많을 경우 백분율은 10%를 더 제안한 것이고, 이것을 합산하여 평균을 내면 총 15%의 크리에이터측 초과 백분율이 연산된다.
- [0064] 이후, 홍보영상 연계서버(200)의 홍보영상 연계엔진(220)은 영상제작 요청상품 내역신호에 포함된 정보 중 판매자 요구치 표시칸(620)에 표시된 요구치를 '100'으로 해서 추가허용치 만큼 추가된 것을 연산한 후 합산하여 평

균을 낸 백분율인 추가허용 백분율 정보 및 크리에이터측 초과 백분율을 대비한다.

- [0065] 이때, 도 3을 주로 참조하여, 기본 항목표시칸(510)에 표시된 것 중 가격을 보면, 판매자 요구치는 100만원이고, 추가허용치는 120만원으로서, 20%의 추가허용이 되고, 수익배분율은 10%에서 12%로 20%의 추가허용이 되며, 이를 합산하여 평균을 낸 20%가 최종적으로 추가허용 백분율이 된다.
- [0066] 이후, 홍보영상 연계서버(200)의 홍보영상 연계엔진(220)은 추가허용 백분율 정보 및 크리에이터측 초과 백분율을 대비 시 추가허용 백분율 정보(보다 작거나 같은 값을 갖는)에 속하는 크리에이터측 초과 백분율 정보를 추출하고, 그 추출된 크리에이터측 초과 백분율에 해당하는 제안치 정보 중에서, 영상제작 요청상품 내역신호에 포함된 정보 중 가중치 표시칸(550)에 표시된 해당 요구항목인 가중치 요구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요구항목의 경우 상품판매자가 요구한 판매자 요구치 표시칸(530)의 요구치에 속하는 크리에이터측 초과 백분율에 해당하는 제안치 정보들인 추가 허용 제안치 정보만을 선별한다.
- [0067] 이후, 홍보영상 연계서버(200)의 홍보영상 연계엔진(220)은 그 선별된 추가 허용 제안치 정보들을 크리에이터별 홍보영상제작 이력정보 DB(213)와 매칭하여, 그 선별된 추가 허용 제안치 정보를 갖는 해당 콘텐츠 크리에이터가 제작한 홍보영상에서 노출횟수가 유행기준노출회수를 초과한 홍보영상의 개수를 카운트한 유행기준 홍보영상 개수정보와 그 선별된 추가 허용 제안치 정보 및 그 선별된 추가 허용 제안치 정보를 제안한 콘텐츠 크리에이터 식별정보를 포함하는 추가 허용 홍보영상 제작관련 요구내역신호를 생성한다.
- [0068] 이후, 홍보영상 연계서버(200)의 홍보영상 연계엔진(220)은 그 생성된 판매자 요구수용 홍보영상 제작관련 요구내역신호 및 추가 허용 홍보영상 제작관련 요구내역신호를 홍보영상 제작관련 요구내역신호에 포함시켜 상품판매자측 단말(100)로 전송되도록 제어한다.
- [0069] 이때, 홍보영상 연계서버(200)의 홍보영상 연계엔진(220)은 콘텐츠 크리에이터가 제작한 홍보영상을 시청할 수 있도록 해당 콘텐츠 크리에이터가 제작한 홍보영상의 URL도 판매자 요구수용 홍보영상 제작관련 요구내역신호 및 추가 허용 홍보영상 제작관련 요구내역신호에 포함시켜 전송함으로써, 상품판매자가 원하는 콘텐츠 크리에이터를 클릭할 경우 링크시켜 해당 홍보영상이 출력될 수 있게 안내하여, 상품판매자가 시청할 수 있게 제공할 수 있다.
- [0070] 상품판매자측 단말(100)은 전송된 홍보영상 제작관련 요구내역신호들에 포함된 각 정보를 토대로 홍보영상의 제작과 관련하여 다수의 콘텐츠 크리에이터가 제안한 제안치가 상품판매자가 요구한 각 요구항목의 요구치를 수용한 부분에 대해 상품판매자가 해당 크리에이터를 인지할 수 있게 표시하는 판매자 요구 수용 크리에이터 리스트부(710) 및 홍보영상의 제작과 관련하여 다수의 콘텐츠 크리에이터가 제안한 제안치가 상품판매자가 요구한 각 요구항목의 요구치를 초과한 리스트 중에서 상품판매자의 추가 허용 제안치에 포함되는 해당 크리에이터를 상품판매자가 인지할 수 있게 표시하는 판매자 추가 허용 크리에이터 리스트부(720)로 이루어진 크리에이터 리스트화면(700)을 디스플레이부(110)를 통해 출력되도록 제어한다.
- [0071] 여기서, 상품판매자측 단말(100)의 디스플레이부(110)를 통해 출력되는 크리에이터 리스트화면(700)의 판매자 요구 수용 크리에이터 리스트부(710)에는 홍보영상의 제작과 관련하여 상품판매자가 요구한 각 요구항목의 요구치를 수용한 크리에이터들을 식별하는 크리에이터 식별자줄(711)과; 홍보영상의 제작과 관련하여 상품판매자가 요구한 각 요구항목의 요구치를 수용한 크리에이터들이 제작한 홍보영상에서 노출회수가 유행기준노출회수를 초과한 홍보영상의 개수를 표시한 유행기준 홍보영상 개수표시줄(712)이 표시되고, 판매자 추가 허용 크리에이터 리스트부(720)에는 다수의 콘텐츠 크리에이터가 제안한 제안치가 상품판매자가 요구한 각 요구항목의 요구치를 초과한 리스트 중에서 상품판매자의 추가 허용 제안치에 포함되는 해당 크리에이터들을 식별하는 추가 크리에이터 식별자줄(721), 다수의 콘텐츠 크리에이터가 제안한 제안치가 상품판매자가 요구한 각 요구항목의 요구치를 초과한 리스트 중에서 상품판매자의 추가 허용 제안치에 포함되는 해당 크리에이터들이 제작한 홍보영상에서 노출회수가 유행기준노출회수를 초과한 홍보영상의 개수를 표시한 추가 유행기준 홍보영상 개수표시줄(722) 및 크리에이터측 초과 백분율 및 추가허용 백분율이 표시되는 백분율 표시줄(723)이 표시되어진다.
- [0072] 이를 열람한 상품판매자측 단말(100)은, 홍보영상 제작관련 요구내역신호들을 제안한 콘텐츠 크리에이터측 단말들 중 선택된 해당 콘텐츠 크리에이터측 단말(300)을 홍보영상 연계서버(200)로 통보한다.
- [0073] 홍보영상 연계서버(200)의 홍보영상 연계엔진(220)은 상품판매자측 단말(100)로부터 통보된 해당 콘텐츠 크리에이터측 단말(300)을 인지하고, 그 인지된 해당 콘텐츠 크리에이터측 단말로 홍보영상의 의뢰를 단문메시지(SMS), 인스턴트 메시지(IM), 메일 또는 홍보영상 연계서버(200)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게재 등 다양한 수단을 이용하여 통보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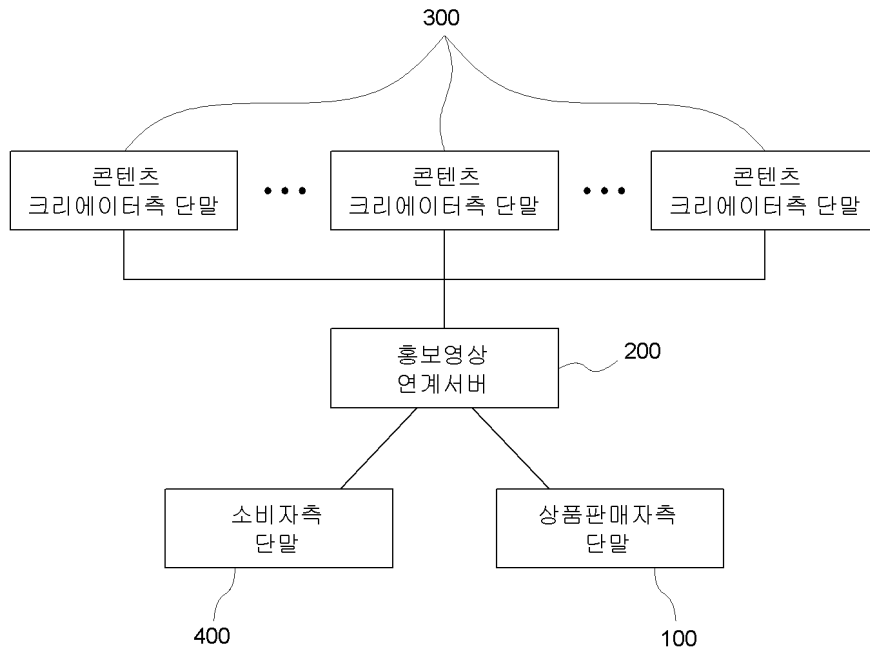
- [0074] 이후, 콘텐츠 크리에이터측 단말(300)은 홍보영상 연계서버(200)로부터 통보된 홍보영상의 외뢰를 통해 제작된 해당 상품의 홍보영상인 크리에이터측 상품홍보 영상정보를 홍보영상 연계서버(200)로 전송한다.
- [0075] 홍보영상 연계서버의 홍보영상 연계엔진(220)은 콘텐츠 크리에이터측 단말로부터 전송된 크리에이터측 상품홍보 영상정보 및 해당 상품의 상품판매 내역정보를 인터넷 쇼핑몰에 노출한다.
- [0076] 이후, 홍보영상 연계서버(200)의 홍보영상 연계엔진(220)은 인터넷 쇼핑몰에 접속한 소비자측 단말에서 그 인터넷 쇼핑몰에 게재된 크리에이터측 상품홍보 영상정보를 시청하면 이를 카운팅하고, 그 카운팅된 크리에이터측 상품홍보 영상정보의 시청 수인 홍보상품 노출회수정보를 크리에이터별 홍보영상제작 이력정보 DB(213)에 누적 저장함으로써, 상품판매자가 자신의 의도에 맞는 홍보영상을 제작 의뢰 시 참조할 수 있게 안내하여 준다.

부호의 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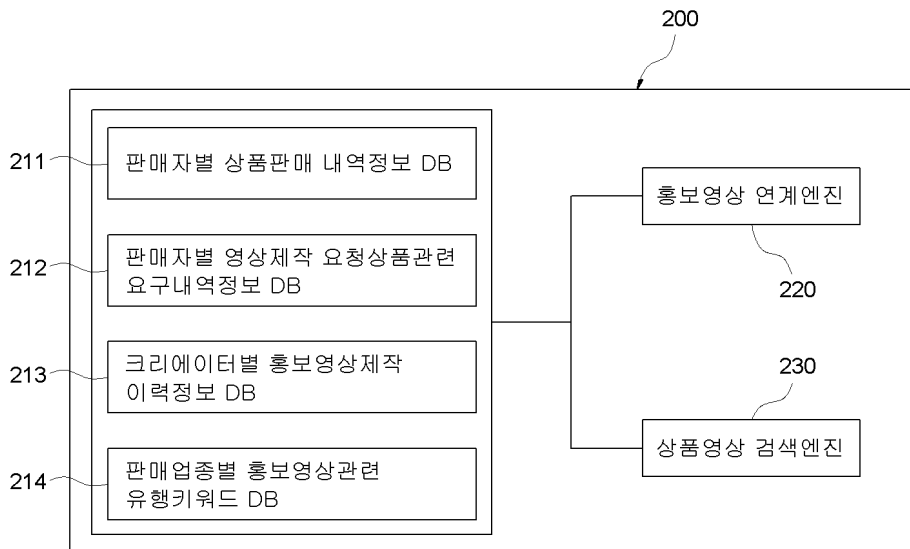
- [0077] 100 : 상품판매자측 단말 110 : 디스플레이부
- 200 : 홍보영상 연계서버 210 : DB부
- 211 : 판매자별 상품판매 내역정보 DB
- 212 : 판매자별 영상제작 요청상품관련 요구내역정보 DB
- 213 : 크리에이터별 홍보영상제작 이력정보 DB
- 214 : 판매업종별 홍보영상관련 유행키워드 DB
- 220 : 홍보영상 연계엔진 230 : 상품영상 검색엔진
- 300 : 콘텐츠 크리에이터측 단말 400 : 소비자측 단말
- 500 : 영상제작 요청상품 구매옵션 안내화면
- 510 : 기본 항목표시칸 520 : 추가 항목표시칸
- 530 : 판매자 요구치 표시칸 540 : 추가허용 백분율 표시칸
- 550 : 가중치 표시칸
- 600 : 영상제작 요청상품 구매대응 제안화면
- 610 : 요구항목 표시칸 620 : 판매자 요구치 표시칸
- 630 : 크리에이터 제안치 표시칸 700 : 크리에이터 리스트화면
- 710 : 판매자 요구 수용 크리에이터 리스트부
- 711 : 크리에이터 식별자줄
- 712 : 유행기준 홍보영상 개수표시줄
- 720 : 판매자 추가 허용 크리에이터 리스트부
- 721 : 추가 크리에이터 식별자줄
- 722 : 추가 유행기준 홍보영상 개수표시줄
- 723 : 백분율 표시줄

도면

도면1



도면2



도면3

항목	가격	홍보기간	수익배분율	참고양이	배경색-핑크
판매자 요구치	100만원	180일	10%	V	V
추가 허용치	120만원		12%		
가중치	V				

530, 510, 520, 540, 550, 500, 110, 100

도면4

항목	가격	홍보기간	수익배분율	참고양이	배경색-핑크
판매자 요구치	100만원	180일	10%	V	V
크리에이터 제안치	120만원	180일	10%	홍보영상에 포함	홍보영상에 포함

610, 620, 630, 600

도면5

710	판매자 요구수용 크리에이터	711 크리에이터 1	712 0회	
		크리에이터 2	3회	
		⋮	⋮	
720	가중치 기반 추가 허용 크리에이터	721 크리에이터 21	722 36회	723 106%~120%
		크리에이터 22	27회	108%~120%
		⋮	⋮	⋮
			700	110